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6
----------	-----

2011년 02월 22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2월 16일, 성백진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2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성백진)

-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응급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응급의료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총괄

-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대상시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의 「2011/2015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심장 혈관질환 발생률은 급증하여 1997년 인구 10만명당 35.6명에서 2007년 43.7명으로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우리나라의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은 불과 4.6%로 보고되고 있어, 선진국의 15%~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응급상황 발생 시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제정으로 다중 집합시설에 응급 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세부내용

(1)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사항(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은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규상 문제가 없음.

(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관련 사항(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에서 시장은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규상 문제가 없음.

(3) 시설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규상 문제가 없음.

(4)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심장혈관질환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음.
- 다만,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숙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실적 해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장혈관질환 발생률이 1997년 10만명당 35.6명에서 2007년에는 43.7명으로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망.
- 답변 : 작년에 행안부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1억 2천 5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거의 마무리 지은 상태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하였음.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응급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들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9.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제공)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 환자 의 보호, 응급 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 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2 항에 따라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법 제16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시설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